

회원관리 규정

<2015. 1. 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신청절차)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별 자격 및 승격)

①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고교 졸업 후 관련 분야의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2. 종신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서 종신회비를 본 학회에 납부한 자.
3. 준회원: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정회원 자격에 미달인 자,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또는 대학교 재학생.
4. 특별회원: 본 학회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법인, 단체, 산업체로 한다.
5. 명예회원: 본 학회 또는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에 공헌이 지대하며,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중요성을 인정하여 추대한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회원으로 승격된다.

제4조(입회금 및 회비)

- ①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의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정회원 중에서 10년 분 연회비를 일시 납(가입 후 2년 내 2회까지 분납 허용)할 시는 종신회비로 인정하여 회비를 면제한다. 단, 50세 이상의 회원은 별도로 종신회비를 정한다.
- ③ 특별회원의 회비와 혜택은 법인, 단체, 산업체를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65세를 초과한 회원과 명예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 ⑤ 입회비 및 연회비는 아래와 같다. (2014년 5월 31일 현재)
 1. 정회원: 8만원, 입회비 1만원
 2. 준회원: 정회원 회비의 50% 해당 금액, 입회비는 정회원과 동일
 3. 특별회원 회비 및 혜택:

구분		연회비	혜택
단체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5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1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10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2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15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3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법인	국공립연구소, 민간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학회, 교육기관 등	5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1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10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2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15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3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산업체	중소기업*	5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1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중견기업*	10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2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대기업*	15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3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산업체 협의회 회원사	50 만원	해당기관 추천 재직자 2인 1년간 정회원 자격 부여
입회비 없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준은 주무관청의 규정을 따른다.

4. 50세 이상 종신회원 회비

가. 나이는 당해년도 - (생년+1),
(예) 2013 - 1958+1= 56세

나. $\frac{(65 - \text{나이})}{15} \times 10\text{년치회비} = \text{종신회비}$, 단 1만이하 절사

(예) 50세 : $\frac{(65 - 50)}{15} \times 80\text{만원}(10\text{년치회비}) = 80\text{만원}$

51세 : $\frac{(65 - 51)}{15} \times 80\text{만원}(10\text{년치회비}) = 74\text{만원}$

.....

56세 : $\frac{(65 - 56)}{15} \times 80\text{만원}(10\text{년치회비}) = 48\text{만원}$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